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호감호소’ 의 장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근거 삭제〉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34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참고자료]	
1.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7
2. 기관별·분야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8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1인
2. 제안일 : 2024. 12. 05.
3. 회부일 : 2024. 12. 0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4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 대상자 관련 조문에서 “보호감호소”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교도소장 등) ①·② (생략)	제3조(교도소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u>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u>감호소·치료감호시설</u>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u>치료감호시설</u> ----- ----- <u>치료감호시설</u>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 ----- ----- ----- ----- ----- -----

현행	개정안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u>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 <u>치료감호시설</u> ----- -----
4의2. ~ 53. (생략)	4의2. ~ 53.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은 보호감호소 또는 그 지소의 장과 이들을 제외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이하 “보호감호소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해당 감호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¹⁾하고 있음.

1)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교도소장 등) ③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4.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

○ 그런데 보호감호소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이하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없어진 시설이므로,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현행법상 그대로 남아 있는 “보호감호소”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보호감호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근거가 폐지되는 효과가 있음.

□ 보호감호는 1980. 12. 제정된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하나로, 동법²⁾에 따르면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고,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보호감호시설에

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4. 제5조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호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보호처분대상자)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이하 “保護對象者”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過失로 인하여 罪를犯한 者는 제외한다)
2. 심신장애자 또는 마약류·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범한 자

제3조(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감호
2. 치료감호
3. 보호관찰

제5조(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2.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제7조(보호감호의 내용) ①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被保護監護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다만, 근로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한다.

②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직업훈련·근로·치료 기타 감호·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감호자의 감호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보호감호시설로 본다.

③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과 감호·교화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보호감호 처분은 이중처벌 및 과잉처벌금지 원칙 위반 등의 문제로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2005. 8. 4.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보호감호제도도 존속할 수 없게 되었음.

○ 이에 따라 당시 보호감호 확정판결을 받아 보호감호 처분 집행 중이거나 집행하여야 할 자에 대해서는 교도소에 수용³⁾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2005. 8. 12.)으로 감호소 명칭을 교도소로 바꾸어 보호감호에 관한 업무를 교도소에서 수행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렇게 보호감호시설이 사라지면서 해당 업무는 교도소로 이관되었고, 특히 이 법은 교도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교도소의 장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⁵⁾하고 있으므로 보호감호소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3) 사회보호법폐지법률 (법률 제7656호, 2005.8. 4.)

제4조 (보호감호시설의 수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보호감호 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 중에 있거나 집행하여야 할 자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 및 "교도소의 장"은 "보호감호시설" 및 "보호감호시설의 장"으로 본다.

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5. 8. 12. 대통령령 제18997호) 개정이유

5) 제3조(교도소장 등) ①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보호감호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근거를 삭제하는 것은 현행 제도와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9

[참고자료 1]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 현행법상 사법경찰은 크게 ①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과 ②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 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취지에서 1956년 도입되었고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2023. 12. 31. 기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14,500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6,000명에 이르고 있음.

[참고자료 2] 기관별·분야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2023.12.31.기준)

1. 중앙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기획재정부(관세청)	관세법 등 위반 범죄	501
2	기획재정부(국세청 ⁶⁾)	조세 관련 범죄	5,273
3	법무부(교소도등)	교도소, 구치소 등 내에서 발생한 범죄	1,358
4	국방부(기무사등)	군용물, 군사기밀보호법, 병역법 등 위반 범죄	312
5	병무청	병역법 위반 범죄	40
6	소방청	소방기본법 등 위반 범죄	2,157
7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9
8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6
9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128
10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사업법 위반 범죄	38
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방역법 위반 범죄	208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범죄	-
13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림, 임산물, 수렵 관련 범죄	179
14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광산보안법위반범죄	14
15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상표법 등 위반 범죄	45
16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	4
17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환경 관련 위반 범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	600
18	환경부(환경청)	환경 관련 위반 범죄	69
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1,057
20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도로법 등 위반 범죄	60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21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457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법 등 위반 범죄	141
2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65
24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어업자원보호법 위반 범죄	503
2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범죄	26
26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범죄	18
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약사, 보건범죄 위반 범죄	36
28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등 위반 범죄	12
29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설비 위반 범죄	22
30	대통령경호처	경호업무 수행 관련 범죄	28
31	행정안전부	안전분야 관련 범죄	3
32	환경부	환경 관련 위반 범죄	13
33	국토교통부	교통 등 불법행위 조사, 단속	4
3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범죄	25
3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	5
합 계			14,536

자료제공: 법무부 형사기획과

- 6) 기획재정부(국세청) :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조사공무원’으로서 조세범칙 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혐의자 등에 대해 심문·압수·수색·범칙 처분을 하는 등 사실상 특사경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명절차도 법무부 예규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관례적으로 특사경 인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서울특별시	식품, 공중위생 등 관련 범죄	400
2	부산광역시	〃	334
3	인천광역시	〃	371
4	대구광역시	〃	203
5	대전광역시	〃	172
6	광주광역시	〃	166
7	울산광역시	〃	235
8	세종특별자치시	〃	45
9	경기도	〃	730
10	경상남도	〃	404
11	경상북도	〃	595
12	충청남도	〃	583
13	충청북도	〃	528
14	전라남도	〃	465
15	전라북도	〃	273
16	강원특별자치도	〃	531
17	제주특별자치도	〃	33
합 계			6,068

자료제공: 법무부 형사기획과